제주에너지공사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서

◇ 공사에서 보유·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, 이의제기, 동의철회, 수집출처 요구 등 개인정보 관련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, 해당 요구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

◇ 공사에서 대응해야할 절차의 필요성에 따라 절차서를 마련하고 관리하고자함

Ⅰ 개요

❐ 관련근거

○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4조(정보주체의 권리) 및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,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

○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1조(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), 제43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등), 제44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, 제44조의2(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)

❐ 권리행사의 기본 원칙

○ 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-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
- 개인정보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
- 개인정보의 처리정지

○ 제주에너지공사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 그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.

○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연기 또는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.

❐ 요구에 따른 권리행사 방법

❍ 개인정보 열람 요구

제주에너지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5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.

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
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다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①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
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
③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
④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업무

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[붙임 1]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열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할 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·시간 및 정보 등을 [붙임 2]와 같이 열람통지서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❍ 고정형 영상정보(CCTV) 열람 요구

정보주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처리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"열람등"이라 한다)을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이거나,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한다.

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 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. 이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등 요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식별처리에 대한 비용을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

❍ 개인정보 정정・삭제 요구

제주에너지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6조(개인정보정정,삭제)에 따라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.
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등 조치 사실 또는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, 이의제기방법을 [붙임 3]과 같이 결과 통지서로 알려주어야 한다.

❍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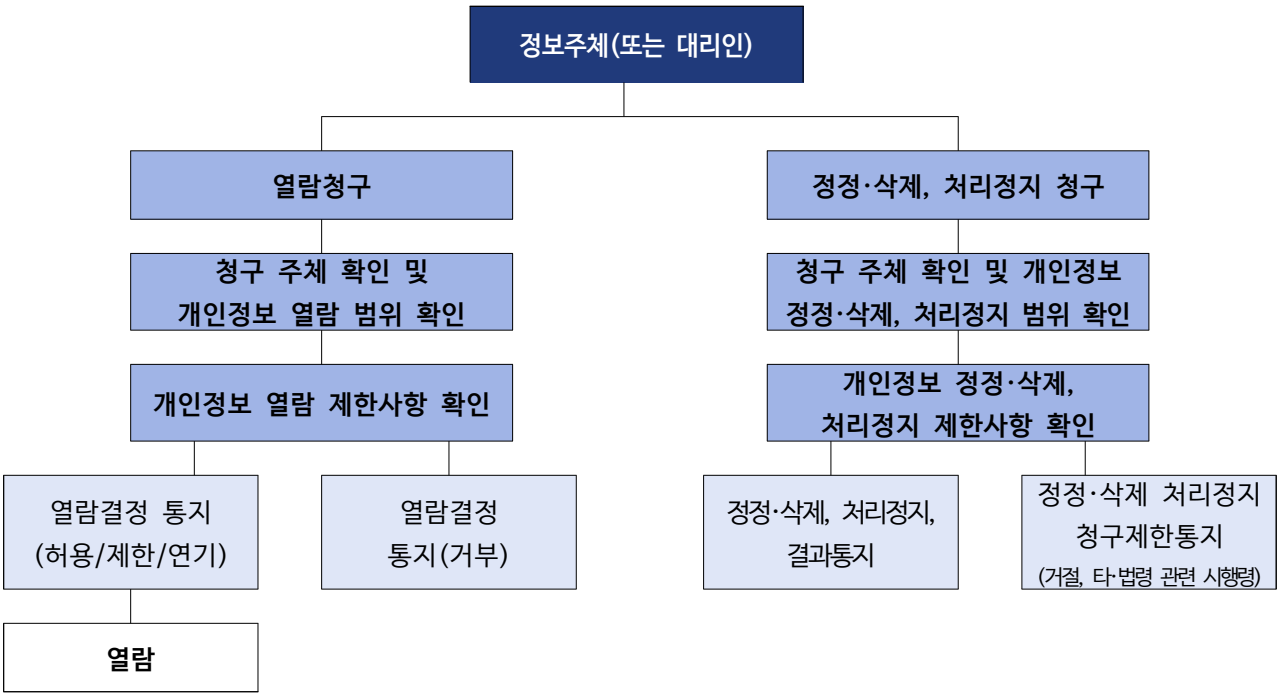
제주에너지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.
다만, '개인정보 보호법' 제37조제2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.
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②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❍ 개인정보 이의제기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해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·연기 및 거절,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, 처리정지, 수집출처 요구 등에 대해 거절 조치한 것에 대하여 거절 등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다.
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,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 할 수 없다.

Ⅱ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

○ 정보주체 요구 유형별 대응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, 제주에너지공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.



○ 제주에너지공사에 직접 신청

- [붙임 1]을 작성 후 방문,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등을통하여 신청한다.
-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'정보주체 법정대리인' 또는'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'로,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는 [붙임 4]과 같이 위임장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
- 필요 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다음과 같이 확인 할 수 있다.

* 본인의 경우 :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)
* 대리인의 경우 :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

다만,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 열람하거나, 열람 요구를 거부하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.

○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신청(온라인)

- 개인정보 포털(www.privacy.go.kr) ▸ 개인 서비스 ▸ 정보주체 권리행사 ▸ 개인정보 열람등요구

[붙임 1]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

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7. 10. 19.>

개인정보 열람 요구서

※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 이내

정보주체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
	주 소	

대리인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 소	

요구내용	[]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[]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의 목적 []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[]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[]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요구인 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작 성 방 법

1. '대리인' 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.
2. '요구내용'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[√]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붙임 2] 개인정보(열람, 일부열람, 열람연기, 열람거절) 통지서

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

개인정보 ([] 열람 [] 일부열람 [] 열람연기 [] 열람거절) 통지서

(앞 쪽)

수신자 (우편번호: , 주소:)

요구 내용						
열람 일시			열람 장소			
통지 내용 ([] 열람 [] 일부열람 [] 열람연기 [] 열람거절)						
열람 형태 및 방법	열람 형태	[]열람·시청	[]사본·출력물	[]전자파일	[]복제물·인화물	[]기타
	열람 방법	[]직접방문	[]우편	[]팩스	[]전자우편	[]기타
납부 금액	①수수료 원	②우송료 원	계(①+②) 원			
	수수료 산정 명세					
사 유						
이의제기방법	※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.				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3항·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주 에 너 지 공 사 직인

210㎜×297㎜[신문용지 54g/㎡]

[붙임 3] 개인정보(정정 ·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

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

개인정보 ([] 정정 · 삭제, [] 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

수신자 (우편번호: , 주소:)

요구 내용	
□ 정정 · 삭제 □ 처리정지 조치 내용	
□ 정정 · 삭제 □ 처리정지 결정 사유	
이의제기방법	※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주 에 너 지 공 사 직인

유의사항

개인정보의 정정 ·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'이의제기방법'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신문용지 54g/㎡]

[붙임 4] 위임장

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
위 임 장

위임받는 자	성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소	
위임자	성명	전화번호
	생년월일	
	주소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(□ 열람, □ 정정·삭제, □ 처리정지)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자

(서명 또는 인)

제 주 에 너 지 공 사 귀하

210㎜×297㎜[인쇄용지(특급) 34g/㎡]